

JangHeung
Web Contents



2018년 05월 25일 08시 01분

목차

목차	2
장애인복지	3
장애인 등록안내 및 절차	3
장애인등록신청 절차	3
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	3
장애인등록증 종류	3
장애인등록증 발급절차	3
장애인복지지원	3
장애인연금	3
장애인연금 지원내용	4
장애수당	4
지원내용	4
장애아동수당	4
지원내용	4
유선 전화요금 할인	4
장애인 감면서비스 통합신청	4
장애인 차량지원	5
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(중전 등록세 포함) 자동차세 면제	5
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	5
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 사용 허용	5
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	5

장애인 등록안내 및 절차

- 근거규정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등록) 및 제32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

장애인등록신청 절차

1. 읍면행정복지센터 :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
2. 의료기관 :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
3. 읍면행정복지센터 :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
4. 읍면행정복지센터 :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
5. 국민연금공단 :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, 등급결정
6. 국민연금공단 : 심사결과 시군구(읍면동)에 통보
7. 읍면행정복지센터 :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
8. 읍면행정복지센터 :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

장애인등록증 등 발급 및 관리

장애인등록증 종류

- 장애인등록증(신청 시, 비용 4,000원)
- 장애인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 +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)
- 장애인통합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 +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+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 할인 기능)

장애인등록증 발급절차

1. 장애인 :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
2. 읍면행정복지센터 : 행복e음 발급정보 전송 → 한국조폐공사
3. 한국조폐공사 :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자 정보전송 → 신한카드
4. 한국조폐공사 : 제작 및 등기발송
5. 읍면행정복지센터 : 등록 및 교부

장애인복지지원

장애인연금

- 신청대상 :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(1급, 2급, 3급+중복장애)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※ 단독가구 119만원, 부부가구 190만 4천원
- 지원(신청)절차 :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→ 군 통합조사담당 소득·재산 조사 → 보장결정(통지서 발송) → 급여지급

장애인연금 지원내용

- 기초급여 : 만18~64세, 근로능력 상실 등에 따른 소득보전
- 부가급여 : 만18세 이상,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일부보전

구분	만18세~만64세	만65세 이상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	월 28만6,050원 기초20만6,050원, 부가8만원	월 28만6,050원 부가28만6,050원
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	월 27만6,050원 기초20만6,050원, 부가7만원	월 7만원 부가7만원
차상위 초과	월 22만6,050원 기초20만6,050원, 부가2만원	월 4만원 부가4만원

장애수당

- 신청대상 : 만18세 이상의 등록된 경증장애인(3급 ~ 6급)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- 지원(신청)절차 : 읍·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→ 군 통합조사팀 소득·재산 조사 → 보장결정(통지서 발송) → 급여지급

지원내용

구분	생계·의료 급여수급자	주거·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	보장시설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)
장애수당	월 4만원	월 4만원	월 2만원

장애아동수당

- 신청대상 : 만18세 미만의 등록된 중증(1급 ~ 3급 중복)·경증(3급 ~ 6급) 장애아동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
- 지원(신청)절차 : 읍·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→ 군 통합조사팀 소득·재산 조사 → 보장결정(통지서 발송) → 급여지급

지원내용

구분	중증장애아동수당	경증장애아동수당
생계·의료급여수급자	월 20만원	월 10만원
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	월 15만원	월 10만원
보장시설 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	월 7만원	월 2만원

유선 전화요금 할인

- 지원대상 : 등록장애인,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
 - 등록장애인 : 가구당 1회선
 -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: 2회선(청각장애인 단체 등에 한해서는 팩스용 1회선 추가)
- 지원내용
 - 시내전화 서비스 : 월 통화요금 50% 감면
 - 시외전화 서비스 : 월 통화요금 30,000원 한도 내에서 50%감면(최고 15,000원)
- 지원절차 :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및 방문, 공인인증서 발급을 통한 인터넷 신청

장애인 감면서비스 통합신청

장흥군청(<http://www.jangheung.go.kr>)

- 지원내용 : 전기요금감면, TV 수신료 면제, 이동통신요금 감면, 도시가스요금 감면
- 지원대상 : 등록장애인(서비스 별 신청가능 장애등급 상이)
- 지원신청 : 읍면행정복지센터

장애인 차량지원

장애이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(종전 등록세 포함) 자동차세 면제

- 지원대상 : 장애등급 1 ~ 3급(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까지)인 장애인의 자동차를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 · 자매의 명의로 공동 등록한 자동차로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
 - ※ 배기량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7인승 이상 ~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, 승차정원
- 지원신청 : 재무과
- 구비서류 : 장애인등록증, 자동차등록증, 주민등록표 등본

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

- 지원대상 : 1 ~ 3급 장애이용 승용자동차 1대(배기량 제한 없음,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)
- 지원내용 : 개별소비세 전액 면제
- 지원신청 : 관할 세무서 및 자동차영업소
- 구비서류 : 장애인등록증, 자동차등록증(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), 자동차매매계약서본 등
 - ※ 차량 교체 시,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

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 사용 허용

- 지원대상 : 등록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 · 사용하는 승용차로 장애인 본인 명의,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
-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 소유 · 사용의 경우 장애인과 세대 분리 시 자격 상실

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

- 지원대상
 -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면서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, 배우자, 형제자매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 ·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
 - 장애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와 장애인콜택시
 - 장애인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
 -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(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 진단이 있는 경우)
 -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
 -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
- 지원신청 : 읍면행정복지센터

JangHeung
Web Contents



어머니 품 같은 장흥
Jangheung County